

# 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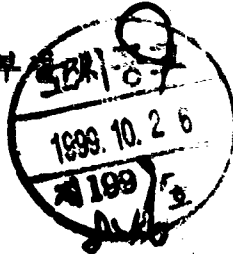
우 100-74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 3707-9371~2 / 전송 3707-9387  
 처리부서: 고용안정과(서소문별관 10층), 과장 김장호 담당사무원 담당 한희창

문서번호 고용68100 - 226

시행일자 '99. 10. 26

경유

수신 내부



보존기간		시 장	
공개여부		[Handwritten Signature]	
산업경제국장	전 결		
고용안정과장	김장호	법무담당관실 사필	
기 안	한희창	노사협력팀장 [Handwritten Signature]	협조
심 사 자	한희창	심사일	'99. 10. 26

제목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

1.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고, 각종 노사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1. 공고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의뢰

1.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간의

원본이조필

인  
대  
조  
필

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 
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고, 각종 노사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 
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 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  
조례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  
랍니다.

첨부 : 1. 공고안 1부. 끝.

## 고 용 안 정 과 장

공고번호	1999. 10. 26	제 139호
담당자	행정사업지원	업무담당관
송부처	구로청	박동봉

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1999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입법예고(안)

원안대로  
처리

### 1. 제정 이유

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고, 각종 노사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노사정 <sup>간</sup> ~~책무를~~ ~~공동~~

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

나. 노사정협의회 <sup>의</sup> ~~의~~ ~~기능을~~ ~~정함~~

~~지역~~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, 지역내 노·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, 실업 및 고용대책 및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

다. 노사정협의회 <sup>의</sup> 구성

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근로자대표자, 사용자대표자, 공익대표자 등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~~고~~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함.

라. 노사정협의회 회의 <sup>47</sup>

- (1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
- (2)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,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및 사업장에  
서 노·사분규가 발생하여 중재가 필요할 경우, 기타 재적위원 3분  
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함.

3. 의견제출

원  
본  
대  
즈  
필  
  
필  
수

이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(법인, 단체, 개  
인)는 1999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  
시장(참조 : 고용안정과장, 전화 : 3707 - 9372, FAX : 3707 - 9389)에게 제  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<sup>이유</sup> ~~이유~~)
- (2)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)  
및 전화번호

이  
의  
서  
필  
수